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3.03.06(수) 15:00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#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발의자 : 유완백 의원 외 6명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2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2월 26일

## 3. 제안 이유

-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,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 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기업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(안 제2조)
- 나. 지원 제한을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조항의 삭제(안 제4조)
- 다.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여성기업 지원사항 강화 (안 제7조, 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도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,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